

선거운동 허용 고무적, 실명인증제는 논란

신문·과방송
선거법 개정과 인터넷언론
실명인증제 관련 언론서면
세미나

지난 8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는 한국언론재단과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선거법 개정과 인터넷 언론’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20일 발표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 가운데 인터넷 언론 관련 부분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이 인터넷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반면 인터넷 언론의 정의와 인터넷 이용자 실명 인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운영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은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의견에 담긴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신문을 선거법 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제지한 바 있다.”면서 “현실과 제도가 괴리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개정의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앙선관위가 낸 개정의견의 핵심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대신 인터넷 언론의 불공정 보도로 인한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이나 후보자, 인터넷 언



론사의 대표자는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치·시사 관련 대화방, 게시판의 이용자에 대해 실명 인증 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된 사실이 발견되면 선관위는 해당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에게 삭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어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규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 운영한다.

김용희 지도과장에 따르면 선관위가 규정하는 인터넷언론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한 자”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기사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관위 산하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프라인 입장에서 인터넷언론을 정의

두 번째 발제자인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 의견’에 대해 “공직선거에서 인터넷언론을 신문, 방송 등 전통적 언론매체와 동등한 매체로서 법적

취급을 하기로 했다는 점은 오히려 낮은 감이 있는 진전된 입법의견”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인터넷 언론에 대해 “전통적 매스미디어의 온라인적 적응 형태인 ‘인터넷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을 기본으로 하여 전통적 언론매체와 주제, 대상, 양태가 다른 온라인 언론을 모두 포괄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선관위가 인터넷 언론을 오프라인 언론의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듯 보여 그 정의가 과잉 또는 과소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을 통해서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의 제정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으며, 또한 ‘공공적 영역’으로서의 사이버 공간을 내밀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강 교수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강 교수는 “인터넷언론으로서 의사소통의 쌍방향성 등이 온전히 드러나는 ‘온라인언론’에 반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실익은 중하지 않으며, 설사 인정될 수 있더라도 원래의 형식보다는 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체 콘텐츠 형성 능력에 따라

발제자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인터넷언론의 정의와 인터넷게시판 실명인증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선관위의

중앙선관위가 낸 개정의견의 핵심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대신 인터넷 언론의 불공정 보도로 인한 침해를 신속히 규제하고 익명성으로 인한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정에 대해 “법에 의해 인터넷이 규제될 때에도 인터넷의 근본적 속성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무엇이 인터넷언론에 속하고 무엇이 속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형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선관위가 기사를 “매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언론으로 정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프레시안이나 오마이뉴스도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그 포털사이트까지 언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김대일 사무관은 “인터넷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이 신고하면 인터넷언론으로 인정하게 된다.”면서 선거법에서 신문과 방송을 정의하지 않듯이 인터넷언론의 정의도 선거법에 담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익명성이 인터넷언론의 강점인데...

실명인증제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룡 국회의원과 이재진 교수, 변희재 시대소리 운영위원은 반대 입장을, 이강래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과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원희룡 의원은 “인터넷은 익명성 때문에 의사소통의 새로운 도구가 됐는데 실명제를 강제하면 본질에 어긋난다.”면서 “명예훼손, 흑색선전은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인터넷의 본질이 가져다주는 이익과 실명제로 얻는 이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입장을 취한 이재진 교수는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는 인터넷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 규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익명성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피해를 규제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변희재 시대소리 운영위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인터넷 정치토론 사이트를 운영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직업이나 신분의 제약 때문에 익명성에 의존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실명을 강요하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실명제를 비판했다.

반면 이강래 의원은 “우리사회에서는 혼탁한 선거운동이 문제가 돼왔다. 인터넷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실명제를 강하게 시행하고 문제점들이 줄어들면 그때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학원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허위선전의 피해는 크다. 반드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실명확인을 강제하지 않는 게시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지만 선관위의 개정의견이 사회변화를 수용한 진일보한 내용이라는 데 동의했다. 더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인터넷 언론의 본질과 중요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